

# 美國의 原子力관련 環境判例研究

## - 原子力法制와 司法的 統制을 中心으로 -

石仁仙\*

### 목 차

I. 문제의 제기	2. 핵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한 사법적 -통제
II. 미국의 원자력법제의 역사와 사법적 대 응	3. 핵사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원자력개발의 역사	IV. 원자력법제의 전개와 사법적 대응에 대 한 평가
2. 원자력발전사에서의 주요쟁점들	1. 원자력 법제의 전개에 대한 평가
3. 원자력법제의 역사와 사법적 대응태도	2. 원자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
III. 원자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특징	V. 맺음말
1. 원자력발전소부지문제에 대한 사법 적 통제	

## I. 問題의 提起

요즈음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보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sup>. 한국의 핵산업계는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전에 발생했던 월

\*이화여대 법대 교수

1) 이 논문은 1998학년도 제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장원, 석광훈, 정종관, “한국의 핵시설과 방사능문제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할”, 「환경정책」 제5권 제1호 (1997.6), 한국환경정책학회, 294면.

성원전 중수누출사고 소식<sup>2)</sup>은 국민들로 하여금 방사능누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 이러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기 이전인 원자력개발 초기에는 원자력을 꿈의 에너지원으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현대산업사회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원자력의 개발은 인류에게 무공해에너지의 공급과 무한한 에너지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추진되었으며, 원자력에너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사용은 어느 에너지원의 사용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기술의 사용은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반응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에서 장래의 電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핵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리라 예상된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은 원자력기술에 의한 발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전원계획의 설정에서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료중심적 의사결정과 과학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들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수용되어 정책입안에 충실히 반영되는 규범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sup>3)</sup>.

원자력발전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둘러싸고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원자력에너지이용에

2) 이에 관하여는 환경공업신문, 1999. 10. 25(제439호), 1면 기사(-정부, 원전안전종합대책 발표) 참조.

3) 곽일천, "경제성장과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주의적 해석", 「생태계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따님, 1992, 317면.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은 원자력산업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국민의 건강과 폐적인 환경보호에 근거한 안전성이란 관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핵심은 이용의 증진과 안전성 보장이라 할 수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러한 두 관점을 조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된다<sup>4)</sup>.

원자력이용의 역사가 긴 국가의 경우 현재의 원자력관련법제는 일반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의 관점으로 옮겨왔으며,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라는 측면에 비교 우위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5)</sup>.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이용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이유로 원자력의 이용증진과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의 안전적 규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이나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핵운동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 등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져가고 있다.

원자력이용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이용에 대한 논란을 거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원자력의 이용촉진과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의 안전적 규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지금까지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보다는 원자력이용 증진에 주력해왔던 상황에서 우리는 잦은 방사능누출사고와 같이 예기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적 규제에 더욱 관

4) 강구철, “原子力安全規制에 대한 司法統制와 多端階的 行政節次”, 『法學論叢』(국민대) 제8집, 1996, 122면.

5) 차칠순, “핵에너지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4, 136면 이하 참조.

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자력증진에서 원자력이용의 위험에 대한 안전적 규제로 방향을 전환해 온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이러한 이중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정립과 司法的 統制方向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이용의 길고 선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법적 통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자력법제의 역사적 발전 내용 및 그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우리나라 경우와의 상세한 대비와 비교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II. 美國의 原子力法制의 歷史와 司法的 對應

### 1. 原子力開發의 歷史

연료로서 원자력 개발은 실제로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미연방정부는 초기 연구와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원자력개발산업을 더욱 고무시키기 위해 연방의회는 1957년 원자로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Price-Anderson Act를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1975년 56개의 상업용원자로가 건설되었고 69개가 건설중이었고 111개 이상의 건설 계획이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스리마일섬의 재난이 발생했고 그것은 원자력사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대중을 경각시켰고 원자력산업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1990년에 112개의 상업용원자로가 전력을 생산했으며 여름 최고 전력 소모기에 에너지의 약 20%를 공급했다. 이러한 발전소(generator)들의

절반가량이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폐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2075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자로들은 1979년 이래로 건설이 허가된 것이 없으며, 원자력은 2075년에는 추억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또 있을 수 있는 석유위기가 원자력산업의 재개발을 동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6)</sup>.

## 2. 原子力發展史에서의 主要 爭點들

미연방에서 원자력산업의 개발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몇가지 쟁점들이 있다. 그러한 쟁점들은 첫째, 방사능위험에 대한 논쟁이며 둘째, 원자력증진자와 규제자로서의 연방정부의 이중역할의 문제이며 셋째,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넷째, 원자력정보에 대한 접근문제 등이다.

### (1) 방사능안전성에 대한 논쟁

원자력산업에 있어 주요 문제 중의 하나가 안전성문제이다. 많은 물질들과 디자인들이 원자로 사용상 현재 안전심사에서 실패해왔다. 그리고 많은 원자로 설치부분들이 계획된 것보다 더욱 빨리 노쇄화되고 있다.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 의한 1988년 보고서는 회계검사원이 감시했던 계획들의 3분의 1은 조기에 파이프가 부식되어 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회계검사원은 모든 시설에서 파이프 상태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권고해왔다. 산업상 관리자들과 기술인들의 잘못된 관리와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 이러니컬하게도 산업 내부인사들은 사고시에 원자력산업은 양호한 안전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6) Nancy K. Kubasek and Gary S. Silverman, *Environmental Law*, Prentice-Hall, Inc., 1997, p. 230.

7) *Id.* at 230-231.

원자력개발증진의 주창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방사능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잘 알려진 가장 고도로 통제되고 있는 유독물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사실인식이 방사능을 전리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거나 현재의 보호기준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능의 유전상의 영향, 낮은 수준의 방사능의 노출에 따른 결과라든지 암을 비롯한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 (2) 규제자와 증진자로서의 연방정부의 이중 역할

1960년 원자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제기되었던 때 연방정부는 능동적으로 민간의 원자력산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염려 중의 하나는 원자력의 규제자와 증진자로서의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AEC)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연방의회는 1954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sup>9)</sup>: AEA)을 통하여 원자력위원회(AEC)에 원자력을 증진시킬 권한과 방향을 지시했다. 동시에 연방의회는 동위원회가 출현하는 원자력산업을 규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은 1974년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상업용핵산업을 규율하는 책무가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와 1977년에 에너지省(Department of Energy: DOE)이 된 에너지연구개발청(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 분리되었다. 에너지연구개발청은 원자력개발을 증진시키고 핵무기를 생산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

8) C. Caufield, *Multiple Exposures: Chronicles of Radiation Age* 24 (1989), at xii.

9) 42 U.S.C.A. § § 2011-2281.

첫째, 에너지省(DOE)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허가와 집행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 핵무기생산공장의 안전에 대해 자체 규율하고 있다. 둘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전적으로 원자력위원회(AEC)의 초기의 중진적인 역할을 전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한편 원자력산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불평해 왔다<sup>10)</sup>. 에너지省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역할에서 야기된 논쟁은 원자력산업의 미래에 대한 최근의 많은 논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

원자력산업은 그 경제성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값싸고 깨끗한에너지로 여겨졌던 원자력이지만 특히 원자력사고시에 쳐야하는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원자력산업체는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는 데 주저했다. 이에 대해서는 1957년 Price-Anderson Act를 통해 그러한 기우는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술상·정치상 문제들은 바로 핵연료공정과정(nuclear fuel cycle)<sup>11)</sup>의 비용이 고도로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악화되었다. 100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의 개발이 광범위하게 인식된 시설들의 재정상의 조건 악화 때문에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취소되었다. 높은 금리와 스리마일섬의 사고로 인해 원자력산업의 경제성은 둔화되었다<sup>12)</sup>. 1980년대에도 원자력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다. 1984년에 의회의 기술평가원

10) Celia Campbell-Mohn, Barry Breen and J. William Futrell, *Environmental Law: From Resources to Recovery*, West Publishing Co., 1993, p.564.

11) '핵연료공정과정(nuclear fuel cycle)'이란 원자력의 유용화를 통해 대중 사용을 위한 전력생산과 관련된 작동을 말한다. 40 C.F.R. § 190.02(a).

12) Campbell-Mohn, Breen and Futrell, *supra* note 10, at 565.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은 기술, 관리, 대중 수용의 수준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연방에서의 원자력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근에 원자력산업은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0년의 한 산업보고서는 세기말까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동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sup>13)</sup>.

한편 이러한 경제성의 문제는 원자력산업이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비용이 드는 것은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폐쇄를 위한 해체작업에 드는 비용때문이다. 최초로 해체된 원자력발전소는 1993년에 해체되기 시작했는데 그 발전소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발전소로 콜로라도주 포트네인트브레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시에 2억2천4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해체하는 데에는 3억3천3백만 달러의 비용이 듈다. 많은 발전소들이 초기에 생산하도록 고안되었던 저비용에너지 를 생산하지도 못한 채 계획된 40년의 수명기보다 더 빠르게 노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적어도 14개 원자력발전소들이 폐쇄되었고 그 발전소들은 저비용으로 해체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발전소들이 해체되기 전 60년간 공전시키는 것을 허용할 예정인데, 폐쇄된 핵시설을 유지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1년에 천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4)</sup>.

#### (4) 정보에 대한 접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이후 의회와 트루먼 및 아이젠하워정부는 핵에너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제정법상·규제상의 구조를 세웠다<sup>15)</sup>.

13) Nuclear Power Oversight Committee, Strategic Plan for Building New Nuclear Power Plants I-1 (Nov. 1990).

14) Kubasek and Silverman, *supra* note 6, p.231.

15) M.Cheh, "The Progressive Case and the Atomic Energy Act: Waking to the Dangers of

1981년 의회는 에너지省에 분류되지 않은 핵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영역에서는 핵정보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접근이 있었으나, 안전성감시가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서 중요한 안전성관련정보는 소유물이라는 주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sup>16)</sup>.

### 3. 原子力法制의 歷史와 司法的 對應態度

#### (1) 1940년대 및 1950년대의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대응

##### ① 원자력에 대한 초기 제도상의 대응시기와 테크놀로지와의 동반자관계시기

총체적으로 1940년대는 원자력에 대해 최초의 법상 제도상의 대응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1950년대는 원자력규제 태도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와의 동반자관계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이후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제정이 필요했다<sup>17)</sup>. 1940년대말 중요문제는 원자력의 발전, 방사능물질의 관리와 처리를 누가 통제하는가였다. 1946년 원자력법<sup>18)</sup>(AEA)에 대한 의회에서의 주요 논의점은 민간인 대 군사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에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나라였는데, 육군은 군사통제를 강조했던<sup>19)</sup> 반면 민간통제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

Government Information Controls", 48 Geo. Wash. L. Rev. 163, 168 (1980).

16)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RC, 975 F.2d 871(D.C.Cir.1992) 참조.

17) B. Miller, "A Law Is Passed: The Atomic Energy Act of 1946", 15 U. Chi. L. Rev. 799 (1948).

18) Ch. 724, 60 Stat. 756 (현재 42 U.S.C. ss2011-2296(1976)).

19) Miller, supra note 17, at 813-819.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원자력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통제옹호자들 중에는 원자폭탄의 개발에 관련되어 일했던 과학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원자분열에 관한 과학적 복잡성 때문에 입법자들은 과학자단체의 실질적 도움이 없이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형성과정에서 과학자들에게 의존해야 했다<sup>20)</sup>.

군사통제는 핵에너지라는 새롭고 전망있는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종국적으로 민간통제의 주장이 수용되었다<sup>21)</sup>. 의회의 대다수는 군대의 원자력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군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과 모순되는 것으로 여겼고, 특히 이러한 반감은 과학계의 반대와 결합되어 1946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위원회를 창설하는 결과를 냉았다.

1946년 원자력법상의 통제는 정부와 테크노크러시간의 전례없는 협동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sup>22)</sup>. 동법상의 통제의 태도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 보았던 원자력의 파괴력의 크기는 실제로 이 힘이 인류에 대해 예외적 이익을 부여해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으로 변화해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상주의적 전망이 충만했다는 사실, 또한 정부가 원자력시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다는 사실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1950년대 평화시기에 의회는 1954년 원자력법<sup>23)</sup>을 통과시킴으로써 원자력미래의 비전의 열매를 맺고자 했다. 동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정상의 유인과 연구보조를 통한 사적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연방정부의 원자력개발에 대한 장악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sup>24)</sup>. 대부분의 의원들은

20) 92 CONG. REC. 9264 (1946) 참조.

21) 92 CONG. REC. 9371 (1946) 참조.

22) Miller, *supra* note 17, at 800 참조.

23) Ch. 1073, 68 Stat. 919. 동법은 1946년 원자력법을 개정한 것이다.

24) D. Myers, *The Nuclear Power Debate*, 1977, pp.48-50, pp.59-60 참조.

사적 기업과 정부의 협동은 완벽한 정부통제라기 보다는 미국자본주의와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미연방의회는 원자력이 미래의 전력세대에 가장 좋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원자력은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오염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환영받았다. 실질적인 재정상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이 원자력에 집중되는 것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핵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보험의 불유용성 때문이었다<sup>25)</sup>. 이에 대해 의회는 Price-Anderson Act<sup>26)</sup>의 형태의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핵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사적 참여에 대한 마지막 장애를 제거했다.

원자력산업의 초기발달은 원자력위원회에 의해 감독되었다. 동법의 규정된 목적들 중의 하나는 원자력의 증진과 동력세대를 위한 방사능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유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증진과 안전성이라는 양자의 책임을 동일기관에 주고 있는 것은 변칙적인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양 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 구성원들은 의회에 대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가 용이했었다. 안전성과 증진이라는 양 측면은 항상 동등하게 의회의 중요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증진에 중점이 두어졌다<sup>28)</sup>.

25) Duke Power Co. v.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 438 U.S. 59, 64 (1978) 참조.

26) Pub. L. No. 85-256, s 1, 71 Stat. 576 (1957) (current version at 42 U.S.C. s 2210 (1976)).

27) 미연방의회는 한 기관에 집중된 증진과 보호라는 이중의 기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1974년 에너지재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 Pub. L. No. 93-438, 88 Stat. 1233)을 제정하였다. 그 법에 의해 원자력위원회(AEC)는 폐지되고 원자력위원회(AEC)의 안전의 기능은 새롭게 창설된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에 부여되었다. 에너지연구개발청(ERDA)에는 에너지증진과 개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28) Duke Power Co. v.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 438 U.S. 59 (1978); Vermont Yankee

## ② 사법적 대응

기술상의 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는 관심에 대한 司法體系의 對應은 즉각적이지 않았다<sup>29)</sup>.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제도상의 대응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마련이다. 법적 체계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어서 또한 추가적으로 변화의 제도적 인식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일부 판사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가치의 추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리하여 대립은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결정의 시대로 이끈다<sup>30)</sup>. 원자력은 20세기 초기 산업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세기 초기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에 비유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19세기의 제도상의 대응을 지연시켰던 요소들은 동일하게 원자력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 대한 현대법체계의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司法상의 대응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추가적 이유들은 원자력 규제사건들에 나타나 있다. 원자력관련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원들은 원자력법과 연방행정절차법(APA)<sup>31)</sup> 양 제정법의 규정을 내세워 그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판사들은 제정법의 규정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를 해석하는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응적 역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왔다<sup>32)</sup>. 그러나 의회는 원자력에 대해 중진과 안

---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35 U.S. 519 (1978);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actor Safety Study: An Assessment of Accident Risks in U.S.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1975); 103 CONG. REC. 10,710, 10,712 (1957) 참조.

29) Dittfurth, "Judicial Reasoning and Social Change", 50 *Ind. L. J.* 258, 271-273 (1975); Friedman, "Legal Rules and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19 *Stan. L. Rev.* 786, 796-798, 823-828 (1967); Friedman & Ladinsky, "Social Change and the law of Industrial Accidents", 67 *Colum. L. Rev.* 50, 72-77 (1967); Fuller, "Reason and Fiat in Case Law", 59 *Harv. L. Rev.* 376, 379-381 (1946) 참조.

30) Dittfurth, *supra* note 29, at 273-283 참조.

31) 5 U.S.C. ss 551-559, 701-706 (1976).

전에 같은 비중을 두었으며 오히려 증진보다 안전을 더욱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법상 태도에서 중점을 증진에서 안전성으로 이동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司法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며 혁명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 (2) 1960년대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대응

1960년대 원자력산업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사적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또한 행정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司法上 尊重의 전통에 의해 보호되는 강력한 행정기관에 의해 감독되었다. 동기간 동안 원자력선택에 대한 초기의 의회규정은 원자력에 대한 의회의 명령으로서 사법상의 결정을 통해 해석되었다. 초기의 원자력법제를 볼 때 연방의회가 주요전력원을 원자력으로 바꾸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司法상의 견해들은 그러한 의회의 명령이 존재했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33)</sup>.

이러한 결과로 원자력에 대한 제정법의 태도는 주요 전력원으로서의 원자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명령이라는 것이 주요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일련의 인식관은 사법부에 의해 선고되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공유한 일련의 태도와 신념들로서 그러한 인식의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한 명령인식이 확고해짐에 따라 원자력의 증진을 지체시킬 수도 있는 방사능물질을 통제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사법부에 의해 정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원자력물질에 대한 주와 지방

32) 예를 들면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35 U.S. 519, 549 (1978); Power Reactor Dev. Co. v. International Union of Elec., Radio & Mach. workers, 367 U.S. 396, 414-416 (1961) 참조.

33)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35 U.S. 519, 557-558 (1978); Northern States Power Co. v. Minnesota, 447 F.2d 1143, 1153-1154 (8th Cir. 1971) 참조.

행위를 포함하여 연방선점주의(preemption)에 의한 연방정부의 완전한 독점이었다. 이러한 인식관과 지방행위의 저지의 문제들은 두 개의 초기 중요한 사건들에서 보이고 있다. 동사건들은 Power Reactor Development Co. v. International Union of Elec., Radio & Mach. Workers<sup>34)</sup>사건과 Northern States Power Co. v. Minnesota<sup>35)</sup>사건이며 이후에 원자력관결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증진목적이 의회에 의해 강조되었을지라도 역시 안전성도 강조되었다. 따라서 원자력관련제정법과 입법역사를 통해 볼 때 원자력증진이라는 목표가 최우선이라고 제정법 또는 입법역사상 명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는 의도적으로 연방선점주의의 문제를 법원에 남겼으며, 법원은 안전성목표보다는 입법의 증진적 목표에 무게를 두는 정책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건들은 원자력산업을 무소불위의 입장으로 남겨놓았다. 사법부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의 입장과 원자력규제영역에서 연방선점주의의 확장적 정의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증진정책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환경보호라는 점차 확산되고 있던 대중적 관심과 갈등을 일으켰다<sup>36)</sup>.

### (3) 1970년대-1990년대의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대응

원자력의 유용성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가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은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197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이다. 내륙수로의 열오염, 통상의 방사능누출, 원자로안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34) 367 U. S. 396 (1961).

35) 405 U. S. 1035 (1972).

36) Diane Carter Maleson, "The Historical Roots of the Legal System's Response to Nuclear Power", 55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597, 615-616 (March, 1982).

주요전환점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방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의 적용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의회에 의해 1969년 NEPA가 제정된 직후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는 동위원회의 허가과정에 대한 집행규칙을 좁은 관점에 입각하여 채택했다. 예를 들면,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로로부터 방사능누출과 열방출이 연방환경정책법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원자력위원회의 개정된 규칙은 환경상의 문제들에 있어서 1971년 3월 이전에 공표되었던 허가절차에서는 청문의 고지가 제기될 수 없음을 특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1960년대 허가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제외시켰다. 환경론자들은 관련시설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허가와 허가조건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련근거규칙들을 비판했다<sup>37)</sup>.

Calvert Cliffs Coordinating Committee Inc., v. U.S. Atomic Energy Commission<sup>38)</sup>(이하 Calvert Cliffs 판결이라 지칭함)판결은 연방환경정책법에 관해 내려진 최초의 중요한 판결로서 환경영향평가서(EIS)작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방환경정책법상 원자력위원회가 개정한 동위원회규칙이 연방환경정책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치하는가를 두고서 전개된 것이다. 동순회법원의 판결은 원자력위원회의 완전한 패배였으며 동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동항소법원의 의견을 개진한 라이트(J. Skelly Wright)판사는 환경법과 원자력규정에 관한 이정표적 의견에서 연방환경정책법하에서 법원의 직무는 의회에서 예고된 중요 입법목적을 연방관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라고 선고했다<sup>39)</sup>. 미연방환경정책법에 의하여 원자력

37) Campbell-Mohn, Breen and Futrell, *supra* note 10, at 580.

38) 449 F. 2d 1109 (D.C.Cir. 1971).

39) Calvert Cliffs Coordinating Committee Inc., v. AEC, 449 F. 2d 1109, 1111, 1 ELR 20, 346 (D. C.

위원회를 위시한 행정기관들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연방환경정책법상의 행정기관의 의무는 단순히 심판자로서 후퇴하여 단지 청문단계에서 환경의 요소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의 정책판단과 결정의 각 단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그런 점에서 현 원자력위원회의 개정된 규칙은 연방환경정책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연방환경정책법은 1970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그런데 원자력위원회의 개정된 규칙은 1971년 3월 4일 이전에 청문이 고지된 사건에 대하여는 청문위원회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문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방환경정책법은 발효후 약 2년간이나 원자력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에 적용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환경정책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을 포함한 여러 근거에서 원자력위원회는 동법원의 판결에 합치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되었던 것이다<sup>40)</sup>.

원자력위원회가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해 제1의 목표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에너지기술을 민간화한 이후 동위원회는 원자력업체를 너무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환경보호론자의 공격은 정치적·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Calvert Cliffs판결은 동위원회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원자력위원회는 분리되어서 원자력연구기능은 에너지연구개발청(ERDA)이, 그리고 규제 및 허가기능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력위원회(AEC)의 중요한 기능을 대부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Calvert Cliffs판결에 따라서 새로운

---

Cir. 1971).

40) 이상돈, 「환경정책법」, 서울아세아문화사, 1985, 34-38면 참조.

규칙이 마련되었다<sup>41)</sup>. 1977년 카터대통령의 촉구로 연방의회는 새로운 기관인 에너지省(DOE)를 창설했다<sup>42)</sup>. 동기관에 에너지연구개발청(ERDA), 연방동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 연방에너지청(Federal Energy Administration)의 모든 책무가 주어졌다.

미연방원자력산업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은 1979년 3월 28일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근처의 스리마일섬원자로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카터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는 사건이 원자로의 기술상의 문제로 야기되었고 사건에 대응하는 인재로 인해 더욱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여겼다. 동위원회는 발전소에 대한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실질적인 누출은 인체의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주요한 건강상의 영향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졌다<sup>43)</sup>.

미연방의회와 원자력산업계는 동사고 이후 변화했다. 1979년에 연방의회는 원자력발전소상 긴급계획의 부적절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청문회를 개최했다. 1980년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긴급계획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규칙을 발했다<sup>44)</sup>. 현재 규제구조하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연방긴급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주와 지방긴급계획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sup>45)</sup>.

1980년대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기였다. 추가로 계획된 새로운 원자로건설은 없었으며 이미 건설 진행중인 발전소들의 완성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친 동안 정부,

41) 이상돈, 앞의 책, 39면.

42)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Pub. L. No. 95-91, 91 Stat. 565 (codified at 42 U.S.C.A. §§ 7101-7352).

43)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the Accident at Three Mile Island, The Need for Change: The Legacy of TMI 2, 12 (1979).

44) 10 C.F.R. § 50.47 (1991).

45) 10 C.F.R. § 50.47(a)(2); 44 C.F.R. pt.353, 56 fed. Reg. 9453 (1991) (FEMA regulations) 참조.

기업과 대중은 원자력폐기물에 대한 저장과 처리시설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관심과 자원을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 간극이 크다.

### III. 原子力에 대한 司法的 統制의 特徵

1970년을 지나면서 대중은 계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관심은 원자력관련소송의 숫자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고들은 대부분 소송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초기의 소송들은 과학적 진보를 방해하는 사회의 부차적 요소에 의한 시도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스리마일섬의 핵사고는 심각한 핵사고였으며 이에 대한 사법상의 대응은 계몽적인 것이 되었다. 현실의 강력한 요구는 법원이 그의 전망을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관련사건들은 다른 환경행정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과학적·기술적 복잡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관련사건 해결은 司法非親和的인 기술상·과학적 추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테크놀로지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원자력관련 환경문제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비추어 원자력안전에 대한 감시과정은 개별 소송제기자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보다 오히려 사실을 밝혀내는 능력을 중진시키는 데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상당히 타당한 평가라 할 수 있다<sup>47)</sup>. 연방법원은 반복적으로 원자력규제문제를 다루어 왔

46) Joel Yellin, "High Technology and the Courts: Nuclear Power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94 Harv. L. Rev. 489, 494 (1981).

47) Id. at 491-492.

다. 원자력관련사건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의견들을 통해 특히 기술적·과학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현존하는 틀짜기의 제한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1. 原子力發展所敷地問題에 대한 司法的 統制

Nothern Indiana Public Service Co. v. Porter County Chapter of the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Inc.<sup>48)</sup> 사건은 원자력위원회규칙 자체에 대한 원자력위원회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제7순회법원은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 부여는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부지선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sup>49)</sup>. 연방대법원은 순회법원의 의견을 거부하고 원자력위원회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sup>50)</sup>. 안전성과 증진 목표간의 선택에서 제7순회법원은 의회명령의 안전성 목표를 선호하는 쪽으로 결정했으며 원자력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sup>51)</sup>. 그 결정에 대한 원자력위원회의 해석을 승인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의회명령의 증진의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더글라스판사는 별도의 찬성의견을 통해 원자력위원회의 규칙제정(rulemaking)절차를 적절히 심사하지 못한 법원의 실패는 증진과 안전기능을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했던 의회의 입법목적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법원의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그 자체 원자력증진을 선호하는 하나의 정책선택일 수 있다.

48) 423 U. S. 12 (1975).

49) Porter County Chapter of the Izaak Walton League of Am., Inc. v. AEC, 515 F. 2d 513, 518-522 (7th Cir. 1975).

50) 423 U. S. at 14-15.

51) 515 F. 2d at 530.

52) 423 U. S. at 16-18.

왜냐하면 동법은 안전성과 증진을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제7순회법원의 견해는 입법상의 명령과 전통적인 행정법 원칙 양자에도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상 제7순회법원의 의견은 대법원견해보다 의회명령에 더욱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것은 순회법원이 안전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원자력위원회의 증진에 대한 강조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의회가 원자력증진이라는 명령을 발해왔다는 동법원의 명백한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한 것 이었다.

## 2. 核廢棄物處理問題에 대한 司法的 統制

원자력의 생산은 긴 반감기로 방사능폐기물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전에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방사능폐기물질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해왔다<sup>53)</sup>.

미연방대법원은 최초로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sup>54)</sup> 사건(이하에서는 Vermont Yankee로 지칭함)에서 핵폐기물문제를 다루었다. 동사건은 원자력을 들러싼 몇몇 순회법원과 연방대법원간의 의견의 분열의 발전된 예를 잘 나타내고 있다<sup>55)</sup>. 연방환경정책법하에서 환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방행위들은 그 계획의 환경영향을 기술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요구하고 있다<sup>56)</sup>.

53)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blems: Hearing before a Subcomm. of the House Comm. on Government Operations, 94th Cong., 2d Sess. (1976) 참조.

54) 435 U.S. 519 (1978).

55) William H. Rodgers, "Judicial Review of Risk Assessments: The Role of Decision Theory in Unscrambling the Benzene Decision", 11 *Environmental Law* 301, 301-302 (1980).

56) 42 U.S.C. s 4332 (1976).

동사건에서 논쟁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치중해 있었다<sup>57)</sup>.

순회법원의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NRC<sup>58)</sup>사건에서 바젤론판사는 일반적인 규칙제정(rulemaking)절차는 폐기물처리문제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한 광장인데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은 행정재량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기관이 동사건에 내포된 중요 쟁점들의 의미있는 논의를 배제시켜 왔으며 연방환경정책법규정상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은 태도로 그 재량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sup>59)</sup>. 그는 핵연료사이클의 장기적 환경상의 내포를 고려하는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가 없다면 1969년 연방환경정책법<sup>60)</sup>은 핵폐기물처리가 개별적인 허가절차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sup>61)</sup>. 바젤론판사는 원자력위원회의 규칙제정 절차상 행해진 입법상 청문절차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동위원회에 대해 실질적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된 기록을 작성하도록 가능한 테크닉들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sup>62)</sup>. 따라서 동순회법원은 핵폐기물과 관련된 동사건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문제에 대해 최소의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대강의 사실인정은 자의적이라고 결정했다<sup>63)</sup>.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동사건 상고심에서 동순회법원판결에 대해 순회법원은 그 권한을 넘어서 불필요하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절차에 개입하

57) 435 U. S. at 529.

58) 547 F. 2d 633 (D.C.Cir. 1976), 동판결은 435 U. S. 519 (1978)연방대법원판결에서 파기되었다.

59) 547 F. 2d at 641 n.17, 654-655.

60) 42 U.S.C. §§ 4321-4347 (1976).

61) 547 F.2d at 641.

62) Id. at 643-654.

63) 547 F. 2d at 646-654.

고 있다고 판시했다<sup>64)</sup>. 렌퀴스트판사는 연방행정절차법(APA)의 입법역사에 비추어 미연방의회의 입법상의 의도는 예외적인 상황(극히 필수적인 상황)이 사법상의 간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칙제정상 절차의 형태는 행정기관재량에 위임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sup>65)</sup>. 연방대법원은 동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인 필수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원자력은 언젠가 싸고 안전한 동력원이 될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는 적어도 원자력에 대해 증진개발의 결정을 해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제한된 역할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과정을 확립해왔다. 따라서 의회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근본적인 정책문제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장하여 연방법원에서의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순회법원의 의견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창설 그리고 원자력 증진과 안전성 양자의 기능의 분배를 통해 볼 때 의회가 원자력안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와 일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회법원 의견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렌퀴스트판사의 지적과는 반대로, 대중은 과도한 행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사기능을 통해 법원은 그러한 대중의 권리의 보호자여야 한다. 더욱이 순회법원은 의회정책을 문제삼았던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실제 관심사이며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법원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대중의 안전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요컨대 극히 필수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64) Vermont Yankee, 435 U. S. 519, 556-558 (1978).

65) Id. at 542-545 참조 (FPC v. Transcontinental Pipeline Corp., 423 U.S. 326, 333 (1976); FCC v. Schreiber, 381 U.S. 279, 299 (1965) 판결들을 인용하고 있음).

친원자력 편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사능폐기물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극히 필수적인 상황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의회가 안전성과 원자력증진에 대해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순회법원의 접근법에 의해 더 잘 표출될 수 있다.

### 3. 核事故에 대한 司法的 統制

#### (1) 핵사고에 대한 재정상의 책무문제

핵사고에 대한 재정상의 책무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방대법원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은 Duke Power Co. v.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sup>66)</sup>이다. 쟁점은 Price-Anderson Act의 합헌성여부<sup>67)</sup>였으며 동법은 핵사고 시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었다<sup>68)</sup>.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 v. AEC<sup>69)</sup>사건에서 노스 캐롤라이나주 서부지구의 지방법원은 적정절차와 평등보호에 근거하여 Price-Anderson Act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sup>70)</sup>. 동법원은 Price-Anderson Act가 안전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무책임을 조장하고 배상가능액은 실제의 손해액과 합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되며 또한 일반사회에의 혜택을 위하여 핵발전소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의적인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동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1978년 6월에 파기되었다. 대법원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핵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을

66) 438 U. S. 5 (1978) 연방대법원판결로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 v. AEC, 431 F. Supp. 203 (W.D.N.C. 1977) 판결은 파기되었다.

67) 438 U. S. at 67.

68) 42 U.S.C. s 2210 (1976).

69) 431 F.Supp. 203 (W.D.N.C.1977).

70) Id. at 222-225.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비록 5억6천만달러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를 한도로 한 책임제한이 헌법상 적법 절차에 배치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의회는 Price-Anderson Act를 제정함에 있어 5억6천만달러란 한도를 하나의 가설로 채택하였음은 분명하다. 의회는 이러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함으로 민간에 의한 핵에너지개발을 촉진하려한 것인데, 책임한도액의 설정은 그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자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하여 번복하여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법은 보통법상의 구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지방법원판결이 원자력증진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연방대법원판결은 원자력증진을 막고있는 장애를 제거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송과정상 지방법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원자력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다<sup>71)</sup>. 이러한 점들은 연방대법원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확립된 인식관을 흔드는 심각한 핵사고가 일어났다.

## (2) 핵사고에 대한 사법적 대응태도

스리마일섬에서의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심각한 핵사고였고, 이것에 대한 사법상의 대응은 계몽적인 것이었다. Susquehanna Valley Alliance v. Three Mile Island Nuclear Reactor<sup>72)</sup>사건상 중요쟁점은 행정상 구제를 모두 거쳤는가(exhaustion)하는 문제와 본안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관한 것이었다. 손상된 원자로부근에 살

71) Duke Power Co. v. Carolina Envt'l Study Group, Inc., 438 U. S. at 91-93.

72) 485 F. Supp. 81 (M.D.Pa. 1979)판결은 부분적으로 인용, 부분적으로 파기되었고, 619 F. 2d 231 (3d Cir. 1980)판결에 대한 사건이송명령은 449 U. S. 1096 (1981)에서 거부되었다.

고있는 일단의 사람들인 원고는 발전소로부터 중수의 방출과 정화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사건에서의 쟁점은 가동불가능한 원자로로부터 오염된 물을 서스퀘한나(Susquehanna)강으로 배출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주민집단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이었다.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방법원은 본안관할권을 결여한 것으로 원고의 소송 원인을 각하였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지방법원에서의 원고의 4개 청구 중 3개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사건이 송명령을 거부하여 제3순회법원의 판결이유는 유지되었다. 동순회법원이 원자력법의 제정법상의 체계가 그러한 종류의 청구의 私的 집행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의 일부를 각하시켰다 할지라도, 법원의 견해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석이 공공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주의깊게 심사할 것임을 지적했다. 원고들은 동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을 단편화시키려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환경정책법에 의거했으며, 연방수오염규제법<sup>73)</sup>하에서 시민소송을 제기했고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사능폐기물을 방출하도록 발전소운전자에게 허가해 줌으로써 생명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sup>74)</sup>. 이러한 세가지 소송이유는 사실인정되었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위해 지방법원에 환송되었다<sup>75)</sup>.

동사건은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필연적으로 관념적이고 추정적일 수 있는 원자로 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 핵사고에 대한 최초의 사법상의 대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동사건이 예측가능한 사법상의 대응형태들 예를 들면 행정상의 구제를 모두 거쳤는가 등과 같은 대응형태들을 고려할 여러 기회들이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회들을 무

73) 33 U.S.C. s 1365 (1976).

74) 619 F. 2d at 239, 244.

75) Id. at 244-245.

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환언하면, 본안심리를 막는 형식적 요건여부 판단에 중점을 두지 않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치가 원자력에 대한 공공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심사하는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사건에서 순회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사건이송명령의 거부는 대법원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리는 것일 수 있다. 순회법원견해의 기조는 원자력증진의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이는 데에 주의하면서도 원자력법의 안전보호의 목표들을 강조했다. 순회법원판결의 실제적 효과와 총체적인 기조는 원자력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고 이는 행정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경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Silkwood v. Kerr-McGee Corp.<sup>76)</sup>사건(이하에서는 Silkwood사건이라 칭함)은 스리마일섬사건과는 다른 배경에서 일어났지만 법원에 원자력 위험의 실체를 인식시키고 개인의 안전을 강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스리마일섬사건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Silkwood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제10순회법원은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보호적 입장을 가정하기를 주저했다. Silkwood사건은 핵재처리장(nuclear reprocessing plant)의 근로자인 카렌 실크우드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사건이었다. 방사능은 Kerr-McGee plant로부터 누출되었으며 그러한 방사능누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sup>77)</sup>. 원고는 동회사가 사용된 핵연료로부터 방사능누출을 통제하는 연방규제를 따르지 않았으며 州보통법상의 원칙하에서 손해배상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첫째 연방선점주의는 州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것, 둘째 만약 연방선점주의가 주의 불법행위구제의 적용을 배제

76) 485 F. Supp. 566 (W.D.Okla. 1979).

77) Id. at 570-571.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연료재처리장의 작동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연방안전기준을 위반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의 소송이 유는 존재치 않는다는 것, 셋째 실크우드에 관한 개인피해는 일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금지되며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sup>78)</sup>.

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원자력법과 Price-Anderson Act의 입법 역사에 분명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으며, 州불법 행위법은 Price-Anderson Act에 의해 커버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핵사고의 경우에 사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동법원은 Kerr-McGee가 실질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제안전기준은 원자력사용이 가져오는 사회에 대한 이익과 방사능으로부터 개인에 대한 가능한 폐해를 균형화시키는 정책의 단순한 표본이었다고 결론지었다<sup>79)</sup>. 그렇기 때문에 동규정들은 절대적 기준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피상적으로 동규정에 따랐다는 사실이 州法上 실제적 또는 처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금지의 근거로서 여겨질 수 없다<sup>80)</sup>. 동법원은 핵연료재처리사업과 항공 및 제약 사업을 비교하면서 양자는 광범위한 연방규정하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어떤 것도 연방규정에 따라 州불법 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으면서 州보통법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과 처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순회법원은 처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폐기하고 오클라호마주 노동자배상법상 규정된 개인피해에 대한 배상에 한정해 인정했다<sup>81)</sup>. 순회법원은 처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규제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그러한 처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78) Id. at 571, 574-576, 586-589.

79) 485 F. Supp. at 572-573, 582.

80) Id. at 582-587.

81) 667 F. 2d 908, 912-923 (10th Cir. 1981).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를 존중하는 연방선점주의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sup>82)</sup>.

Silkwood사건의 전개는 스리마일섬사건의 전개와 현저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리마일섬사건은 원자력의 고유한 위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강조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존중태도를 버리고 더욱 경계적 입장을 취한 사법부의 예이다. 실크우드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태도도 흡사한 입장을 취했다. 실크우드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의견의 명백한 중요성은 공공안전관심은 매우 크다는 것 그리고 피고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연방규정에 의거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법원견해의 명백히 확고한 기조는 원자력쟁점에 대한 변화하는 사법부의 진전된 태도였다<sup>83)</sup>.

## IV. 原子力法制의 展開와 司法的 對應에 대한 評價

### 1. 原子力法制의 展開에 대한 評價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원자력법제를 볼 때 연방의회가 주요전력원을 원자력으로 바꾸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자력증진이라는 목표가 최우선이라고 제정법 또는 입법역사상 명령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司法上의 견해들은 그러한 의회의 명령이 존재했었다는 듯한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과 증진이란 목표는 항상 의회입법을 통해 둘 모두 중요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기에는 증진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미연방의회

82) *Id.* at 923.

83) Maleson, *supra* note 36, at 638.

는 한 기관에 집중된 중진과 안전성이라는 이중의 기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핵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중요시되어 입법에 반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관련입법에 있어서 다른 환경법과는 달리 원자력법상 규정과 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상의 사적 권리의 결여라든가, 정치적으로 약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대상화시키는 핵폐기물법상 고준위폐기물계획을 단일부지로 묶는 결정과 같은 문제점들이 현존하고 있다.

민간과 방위원자력발전소 양자에 대한 현행규제법상 심각한 결함은 원자력법과 원자력법과 결합된 규정과 기준들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의 사적 권리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법<sup>84)</sup>은 “미법무부장관이 원자력위원회에 원자력관련소송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고 자문할 때까지는 동법 규정상 위반을 한 개인을 상대로 동위반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 없으며, 미법무부장관에 의한 소송제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에 의한 소송은 개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에 근거하여 이해당사자인 시민은 원자력법상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한 원자로(power reactor)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제는 10 C.F.R. § 2.206상 원자력규제위원회에게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허가 받은자에게 왜 허가가 수정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되는지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자로 규제책임자는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에 관해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sup>85)</sup>. 따라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권리의 결여와 결합된 청원을 거부할 책임자의 자유로운 재량은 동규정조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84) 42 U.S.C.A. § 2271.

85) 10 C.F.R. § 2.206(b).

만들어왔다. 더욱이 미연방항소법원 중 3군데의 순회법원들은 동조항규정청원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거부는 Heckler v. Chaney<sup>86)</sup>판결에 따라 심사불가능하다고 판결해왔다. 따라서 불가피한 결론은 시민, 주, 시당국, 회사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법규정상의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법과는 대조적으로 연방환경입법들은 관련 당사자에게 법률 또는 관련규정과 기준의 위반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고 있다<sup>87)</sup>. 연방환경입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시민소송은 책임당국에 대해 반오염기준의 대한 강력한 집행을 더욱 자극하려는 것으로 만약 행정기관이 그러한 집행을 활발히 하지 못한다면 대안적 집행메카니즘을 제공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민이 핵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과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핵시설에 대한 공공적 승인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sup>88)</sup>.

결과적으로 의회는 원자력법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환경상의 요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하거나 또는 에너지省의 핵시설에 있어서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송의 사적 권리에 관해 명백히 규정하도록 수정해야만 한다.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한 시설의 경우 의회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청원이 거부된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한 시민이 행청원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의회는 에너지省 또는 독립규

86) 470 U. S. 821 (1985); Safe Energy Coalition of Michigan v. NRC, 866 F. 2d 1473(D.C.Cir.1989); Arnow v. NRC, 868 F. 2d 223, 19 ELR 20,550 (7th Cir.1989), cert. denied 493 U. S. 813, 110 S.Ct. 61, 107 L.Ed.2d 29 (1989); Pub. Interest Research Group, Inc. v. NRC, 852 F.2d 9, 16, 18 ELR 21,437 (1st Cir. 1988)참조.

87) 예를 들면 42 U.S.C.A. § 7604(CAA); 33 U.S.C.A. § 1365(FWPCA) 참조.

88) Campbell-Mohn, Breen and Futrell, *supra* note 10, at 632.

제기관에 당해핵시설에 대해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속력있는 규정을 공포하도록 지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은 핵폐기물 저장소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복수의 잠정적인 부지선정, 지역형평고무, 연방정부와 잠재적 중심 주정부간의 권한공유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6년 에너지省은 여러 잠정적인 저장소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는 州들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기술상 결함이 있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계획을 추진했다. 1987년 개정된 핵폐기물정책법은 에너지省의 잘못 인도된 접근법에 따라 모법의 기초였던 핵심개념인 형평의 개념을 제거하고 가혹하고 정치적으로 편의적인 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동개정법은 저장소의 단일잠정적인 부지로서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단지 4명의 의원만을 가진 네바다주를 선정했던 것이다.

고준위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발전은 편법에 대해 공정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대해 건전한 과학적 해결을 강조하는 계획을 의회가 규정하고, 정부 또는 비정부단체가 그러한 계획을 수행할 때에 비로소 달성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의회는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었다<sup>89)</sup>. 그러나 아무리 잘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일정계획은 잠정적인 저장소위치선정상 저항을 받을 것 또한 확실하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계획이 건전하고 형평에 맞게 고안되고 공정하고 주의깊게 수행된다면 적어도 부지로 선정된 州 또는 州의 시민들은 이러한 계획을 수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핵폐기물법은 그러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이후 전체의 고준위폐기물계획을 단일부지로 묶는 결정을 재고려해야 할 것이다.

---

<sup>89)</sup> *Id.* at 633.

## 2. 원자력에 대한 司法的 對應에 대한 評價

원자력관련환경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는 원자력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원자력관련 법규해석에 있어서 원자력증진과 안전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의 변화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원자력관련 환경판례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전문성에 의거한 행정기관의 결정에 관련한 소송에서 과학문제에 대한 사법심사문제와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원자력관련사건은 대부분 정책문제와 과학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정책·과학전문성에 근거하여 행사하고 있는 행정부의 재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문제로 제기되었다. 원자력에 관한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과연 이러한 분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자연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sup>90)</sup>. 그러나 1970년대 콜럼비아특별구순회항소법원의 데이비드 바젤론판사는 이러한 과학법원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대신에 환경쟁점에 대한 모든 견해들은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 속에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며 법원에 제기된 원자력사건을 비롯한 많은 환경사건들은 중요한 가치선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사건들은 설사 그것들이 기술적 문제들로 치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대중의 공적인 심사와 참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판사들과는 분리된 전문가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

---

90) Arthur Kantrowitz, "Science Court Experiment", 13 Trial 48, 49 (1977.5) 참조.

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청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는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sup>91)</sup>. NRDC v. NRC II<sup>92)</sup>사건과 Aeschliman v. NRC<sup>93)</sup>사건에서 동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폐기물처리를 고려할 때에도 원자로허가과정에서 통합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핵연료사이클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새롭고 완성된 측량분석을 발했다. 동판결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환경책임에 대한 깊고 거시적인 견해를 취하고 충분히 사실인정을 지지하도록 유인하는 바젤론판사의 노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의회가 일정범위의 환경목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책임을 행정기관에 부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종국적인 권한을 가지며 심사법원이 행정기관이 적절히 정책결정재량을 행사했다고 결정했다면 동 법원은 정책재량결정 그 자체에 대해 거의 권한이 없게 된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행정기관의 규칙제정권한을 상당히 존중해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Vermont Yankee<sup>94)</sup>판결에서 규칙제정과정에 있어서 의회자신이 부과하지 않은 어떠한 절차적 요건도 부과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sup>95)</sup>. 동판결은 사법적 감시의 포기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과정을 개방하는 데 하급법원의 창조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원자력 문제와 같은 환경영역에서 사법적 심사를 삭제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전개방향은 아닐 것이다. 원자력관련환경사건에서 사법심사가 자극해왔던 그러한 충분한 행정절차상의 기록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면 법원, 의회, 학자들 또는 대중에 의한 환경에 대한 의미있는 감시는 가능하지 못했을

91) David L. Bazelon, "Coping with Technology through the Legal Process", 62 *Cornell Law Review* 817, 817-832 (1977).

92) 547 F. 2d 633 (D.C.Cir. 1976).

93) 547 F. 2d 622 (D.C.Cir. 1976).

94) 435 U. S. 519 (1978).

95) *Id.* at 524-525.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제상황이 법원이 전망을 이동하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요소이다. 폐해 후에 만들어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결정들은 스리마일 섬사건에서처럼 폐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서 흡사한 결정을 내리도록 고무할 때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실크우드사건에서 처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제10순회법원의 결정과 같은 판결은 이러한 연유로 좌절스럽게 느껴진다. 원자력의 중진과 안전에 대한 균형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장래 재앙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원자력에 대한 실제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함에 있어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지금 원자력에 대한 전망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이러한 전망의 이동은 핵기업과 핵규제자들에게 과거 30여년간의 원자력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인식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 V. 맷음말

이상 미국의 중요 원자력 관련 환경판례를 통해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통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원자력산업 개발에 있어서 방사능위험 논쟁과 원자력증진자와 규제자로서의 연방정부의 이중역할의 문제는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대응태도의 중요요소로 늘 작용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원자력법제는 테크놀로지와의 동반자관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자력문제를 다루는 사법부의 대응은 안전을 위한 원자력규제에 있어서 미온적이었다. 사실 원자력법제는 초기부터 늘 원자력증진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지만 사법부의 다수의견의 대응태도와 인식관은 원자력증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점차 사법부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스리마

일섬사고와 같은 원자력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관련 행정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도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했으며 결과적으로 원자력정책에 대한 통제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제 원자력의 미래는 비판적 시점에 와 있다. 현재의 쟁점은 원자력테크놀로지에 대한 사법상의 대응이 원자력증진을 위해 기술주의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강조로 옮겨갈 것인지 여부이다. 미연방의회는 원자력 관련 입법에서 두가지 목표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원자력입법목적에 대한 시각의 초점을 원자력이 절대적이며 현실적 명령이라는 관점으로부터는 이동했지만 아직도 원자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공공안전의 보호자로 행위하지 않는다면, 스리마일섬 핵사고와 같은 핵사고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공공안전의 신뢰를 배반하는 인식관을 계속 견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원자력관련행정기관은 원자력증진과 안전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원자력입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도에서 사법부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원자력관련환경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심도있는 관계설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